



환경부공고 제2008-250호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 8. 22

1. 개정이유

제명변경을 통해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음지도의 작성, 지역특성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강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제명을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을 완화함.

나. 소음지도 작성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 근거 신설(안 제7조, 안 제21조)

-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 소음·진동규제기준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의 간소화(안 제13조)

-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허가시 통합적으로 하도록 함.

마. 공사장 소음 측정기 설치에 대한 조례 근거 신설(안 제22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기준의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상시 측정을하도록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신설(안 제23조의2)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07.9)에 따라 생활소음·진동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함.

사.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및 관리지역 지정(안 제26조, 안 제27조)

- 규제지역 안에서의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를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으로 하고,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실내소음도 설정 근거 마련(안 제29조)

- 수음원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소음 관리기준 준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내소음기준을 마련함.



환경법규

자. 제작자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31조의2, 안 제31조의3)

-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률상의 근거 마련 및 법률로 상향 조정함.

차. 저소음 건설기계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안 제44조)

- (1) 현재 굴삭기 등 9종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해서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표지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음.
- (2) 저소음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음 건설기계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함.

카. 철도차량 제작자 소음권고기준 설정 근거 마련(안 제45조의2)

- 환경부장관이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 02)2110-6812, 팩스 : 02)504-5472, 전자우편 : yijckr@me.go.kr)



환경부령 제29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8. 8. 4

1. 개정이유

종전에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문서로 작성·제출하던 각종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투명화하고, 수출입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실효성이 낮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613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제정되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등이 같은 법에 규정됨에 따라 다이옥신과 관련된 소각시설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법규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준 강화(안 제10조제3호 단서 신설)

- (1)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인 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과다하게 하수도로 배출되어 악취가 발생되는 한편, 하수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 (2)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수에 포함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이 되도록 함.

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기준의 완화(안 제18조의2 신설)

- (1) 사업자가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을 소량 배출하는 경우에도 지정폐기물처리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후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지정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 (2) 폐농약, 광재(鑛滓), 분진, 폐흡수제 등의 지정폐기물을 월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처리계획을 확인받도록 하던 것을, 월 평균 13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만 확인받도록 함.

다.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의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방법·절차 마련(안 제20조제2항, 안 별표 6 신설)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운반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운반자 및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인수내용을 입력하도록 하며, 전자정보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대체수단을 통해 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수출입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나 주문서, 폐기물 운반계획서 및 폐기물 분석 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물리적 성상이나 화학적 성분이 같고 통관세관이 같은 폐기물은 1년 동안의 수출입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마.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67조의2 및 별표 17의2 신설)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수리·수선한 제품을 판매할 때에 수리·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함.